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 2024-41

제출년월일: 2024년 4월 일 제 출 자: 강 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[공유재산 취득 1건]

- 보훈회관 리모델링(증축) 사업
- 위 치: 방화동 645-11
- 사업규모: 토지 357m², 현 연면적 439.33m²(1 ~ 3층) → 연면적 773.40m²(1 ~ 4층 규모. 334.07m² 증가 예정)
- 소요예산: 3,133,000천원(특교금: 1,500,000천원, 구 1,633,000천원)

[공유재산 처분 1건]

- 구)강서문화센터 매각
- 위 치: 화곡동 111-90
- 규 모: 토지 1필지 972㎡, 건물 1동 2,046.45㎡
- 기준가격: 7,599백만원(토지: 6,571, 건물: 1,028)

3. 관련법령

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○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10조

4. 참고자료

-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,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 각 1부.
-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보조자료 각 1부.

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

(단위 : m², 백만원)

	구 분		건수	면적	금액	비고
		토지				
	 	건물	1	773.40	3,133	리모델링 (증축) 비용
		기타				
		토지				
취	1. 매입	건물				
711		기타				
		토지				
득	2. 교환으로 취득	건물				
		기타				
		토지				
	3. 기타 취득	건물	1	773.40	3,133	리모델링 (증축) 비용
		기타				
		토지	1	972	6,571	
	계	건물	1	2,046.45	1,028	
		기타				
		토지	1	972	6,571	
처	4. 매각	건물	1	2,046.45	1,028	
		기타				
		토지				
분	5. 양여	건물				
		기타				
		토지				
	6. 교환으로 처분	건물				
		기타				

2024년도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백만원)

ਨੀ ਸੀ	재산표시			기준	소요	시기	키ㄷ/메카\기 Ŏ	NWHN	
연번	구분	소재지	지목	(연)면적	가격	예산	(연월)	취득(매각)사유	사업부서
1	건물	방화동 645-11	_	773.40	-	3,133 (공사비 등)	2025. 3.	보훈회관 리모델링(증축)	복지정책과

※ 기준가격: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

- 토지: 개별공시지가

- 건물: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

- 그 외 재산: 시가표준액

- 건물 신·증축,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: 건축비, 시설비 등 사업비

2024년도 수시분 처분 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백만원)

લ્યું મો		재산표/		기준	소요	시기	키드/메카/기 0	រាសមរា	
연번	구분	소재지	지목	(연)면적	가격	예산	(연월)	취득(매각)사유	사업부서
1	토지	화곡동	대지	972	6,571	28	2024. 6.	강서아트리움	재무과
1	건물	111-90	_	2,046.45	1,028	40	2024. O.	건립에 따른 매각	イントイ

※ 기준가격: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

- 토지: 개별공시지가

- 건물: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

- 그 외 재산: 시가표준액

- 건물 신·증축,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: 건축비, 시설비 등 사업비

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별 보조자료

연 번	제출부서	안 건 명	쪽수
1	복지정책과	보훈회관 리모델링(증축) 사업	7-12
2	재무과	구)강서문화센터 매각	13-19

1

보훈회관 리모델링(증축) 사업

□ 관리계획 수립 구분: 재산의 취득

	구 분			내	역	사 업 명		
사유	방법	대상	건수	(연)면적(㎡)	공사비 등(천원)	(사업부서)	비고	
취득	리모 델링 (중축)	건물	1	773.40	3,133,000	보훈회관 리모델링(증축) 사업	건물 리모델링	
	 계				3,133,000	(복지정책과)	(증축)	

□ 추진배경(목적)

- 현 보훈회관 공간 협소 및 이로 인한 별도 소재 단체(고엽제전우회)의 사무실 상황이 열악(누수, 결빙 등)하여 보훈단체를 한 공간으로 통합· 관리가 필요함
 - ※ 보훈단체연합회, 상이군경회, 광복회, 미망인회, 유족회, 고엽제전우회, 무공수훈자회, 6·25참전유공자회, 특수임무유공자회, 월남전참전자회
-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한 연로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단독 보훈회관 마련을 통해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위 치: 강서구 방화동 645-11(구 방화2동주민센터)
- 사업규모: 부지 357m², 현 연면적 439.33m²(1 ~ 3층)
 - → 연면적 773.40m²(1 ~ 4층 규모, 334.07m² 증가 예정)
- 사업기간: 2023. 10. ~ 2025. 3.(예정)
- 사업내용: 유휴공간 리모델링(대수선) 및 증축, 내부 리모델링 공사 → 단독 보훈회관 공간 마련
- 소요예산: 3,133,000천원(구비 1,633,000천원, 특교금 1,500,000천원) 연도별 사업비

(단위: 천원)

합계	2024년	2025년	
3,133,000	2,833,000	300,000	
(구비 1,333,000, 특교금 1,500,000)	(구비 1,333,000, 특교금 1,500,000)	(구비 300,000)	

- 산출내역

	구분	산출기초	금액(천원)	비고
	총계		3,133,000	
공사비	공사비	- 건축공사(기계 포함): 1,380,000천원 - 전기, 통신, 소방공사: 321,000천원 - 흙막이공사: 54,000천원 - 구조보강공사: 542,000천원 - 철거 및 폐기물처리: 100,000천원	2,397,000	
	설계비	- 건축설계: 55,000천원 - 설비설계: 23,000천원	78,000	
용역비	감리비	- 책임감리비 산정(공사비*약 10%) 300,000천원 ※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등	300,000	
	기타	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: 40,000천원	40,000	
기타	자산취득비 등	- 가구, 집기, 물품 등: 300,000천원 - 공공요금(상하수도, 전기 등): 18,000천원	318,000	

○ 기준가격: 1,450,389천원

- 토지: 1,348,389천원(개별공시지가: 3,777천원/m²) ※ 대지면적: 357m²

- 건물: 102,000천원(시가표준액)

□ 추진현황

- 2023. 10. ~ 11. 보훈화관 이전 예정지(구 방화2동주민센터) 리모델링 추진 계획 수립
- 2023. 12. 재산관리관 변경(자치행정과→복지정책과), 안전진단 실시,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(기획예산과)
- 2024. 1.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알림(결과: 적정), 설계용역 실시(건축, 설비설계)
- 2024. 2.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

□ 향후계획

- 2024. 5. 설계(건축/설비설계) 용역 완료
- 2024. 6. ~ 2025. 2. 리모델링 공
- 2025. 3. 보훈회관 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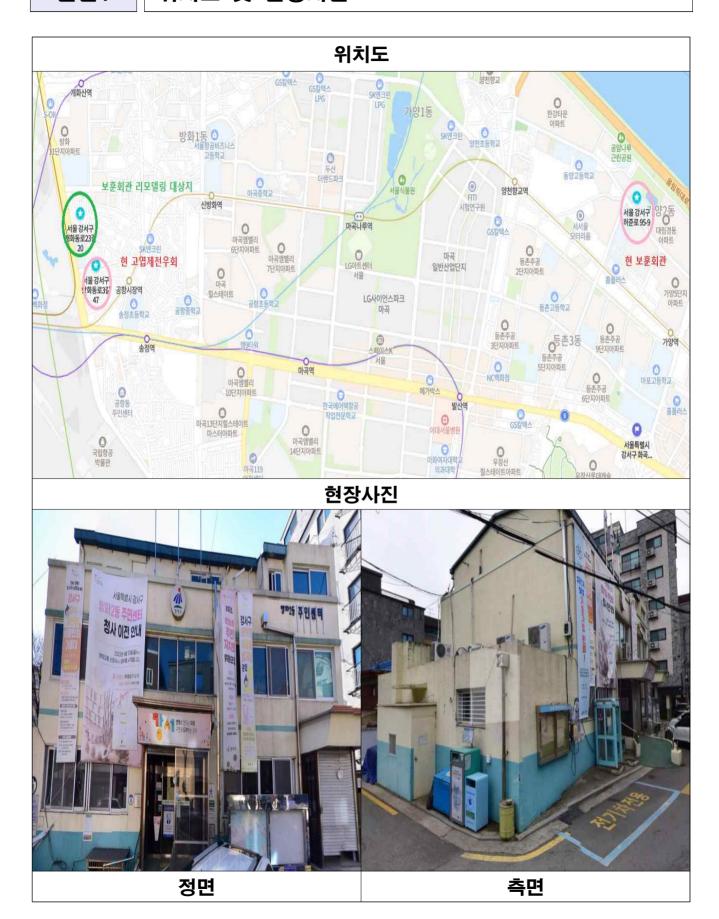
□ 기대효과

○ 국가에 희생·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남은 생에 단독 보훈회관 마련을 통해 원활한 보훈활동을 지원하여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

붙임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- 2. 토지이용계획서 1부.
- 3. 관련법령 1부.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토지이용계획서

		토지이용계획	역확인서			2	H리기간 1일
r) al al	i) m		주소				
신청인	성망		전화번호				
신청		소재지	Ail = -		지 번	지 목	면적(m')
토지		서울특별시 강서구 방			645-11	(08)대	357
지역· 지구등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	도시지역, 제2종일반축	-71 4 HW 8 910	r, 8 #4	56 X & Y T (0 8/, II(H)	47
의 지정 여부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	가축사육제한구역(지역 역(수평표면)<공항시설 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 탁고도:77-257m)<군	설법>, 상대보호· .망)<학교보건법	구역(2014 >)<교육환	-09-26)(학교 정 보호에 완헌	환경위생정화구 법률>, 대공병	·역(강서교육지 ·어협조구역(위
3 제 9조	승규제 기본법 시행 제4항 각호에 해당 되는 사항	[해당없음]					
확인도면	650-124 650-725 650-725 642-3 8 644-6 642-3 8 644-6 7 644-6	648-31 4 648-30 C 648	48-42U 548-45U 548-44U 648-49U 648-49U 648-49U 648-49U 645-11 U 648-29U 645-12U 645-29U 645-29	648-524 648-534 648-534 645-13-8 645-13-8	8-55CH 647-136 18-54CH 2 647-14	47-22/4 9	범례 패플미족권제꾸 도시자에 배강통일단무개지에 자연하지지에 정비구역 다시설을보고자구(공항 가축시축제한구에 도로 발표2위(중 50m·70m) 공보2위(즉 12m·15m) 공보 법생동
		645-27대 ^교 641 본법」제10조제1항이 의 토지이용계획을 위	게 따라 귀하의		4111 646 814	646-85四 辛	적 1:1200 입증지불이는곳
	한 0023 강서구 공용 2024.3 GSJ00	다 서울특별 28	2024년 03월 시 강서구 ²	1 28일	성자(구 성자(이인 지리사무용	(3	수입증지 금액 이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)

관련법령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

-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·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른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・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개정 2022. 4. 20.>
-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- 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10조

- 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-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 2022.11.9.)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구)강서문화센터 매각

□ 관리계획 수립 구분: 재산 기준 가격 변경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

구 분					내	사업명		
소재지	사유	방법	대상	건수	(연)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(사업부서)	비고
회곡동	처분	매각	대지	1	972	6,570,720	구)강서문화센터	
111-90	처분	매각	건물	1	2,046.45	1,028,088	매각 (재무과)	

- ※ 기준가격: 대지-공시지가, 건물-시가표준액 적용(2023. 4. 28. 공시일기준)
 - · 당초 관리계획(2014년)의 토지 및 건물 **기준가격보다 현재 35.9%(5,591,183,856원→ 7,598,808,771원) 증가됨**
 - ·기준 가격 30%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어 구의회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아야함

□ 추진 배경

- 강서문화센터 시설 이전 이후,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훈회관 등으로 시설 활용 예정이었으나,
- 투입 예산 대비 건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 부지 확보함
- 「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」에 대한 2014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완공 후 현 강서문화센터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 사항이었으며
- 건물 공실 기간이 장기화되며 노후화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구 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함

□ 재산 현황 및 추진 개요

	토지			건물	コスコス		
소재지	지목 면적 (㎡)		규모 연면적 (㎡)		용도	기준가격 (원)	비고
화곡동 111-90 (화곡로 215)	대	972	지하1층 지상5층	2,046.45	근린생활시설, 주택	7,598,808,771	3종일반 주거지역

- ※ 기준가격(2023. 4. 기준): 토지개별공시지가(6,570,720,000원)+건물시가표준액(1,028,088,771원)
- ※ 재산취득일: 1998. 3. 26.(4,693,396,000원)

○ 매각규모: 지하1층/지상5층(대지면적 972m², 연면적 2,046.45m²)

○ 건축연도: 1993. 11. 25. ※ 관리취득: 1998. 3. 26.(매입)

매각시기: 2024년 6월계약방법: 일반입찰 매각

□ 매각예정가격 산출

		매 각 예 정 가 격								
구분		공시지가 기준								
1 &	공시지가 (원/㎡)	면 적 (㎡)	금 액	감정평가 산술평가액						
토지	6,760,000	972	6,570,720,000	15,309,000,000						
건물	-	2,046.45	1,028,088,771 (시가표준액)	1,261,540,950						
합계			7,598,808,771	16,570,540,950						

※ 감정평가액: 탁상감정가(2023. 12.)

참고) 2020년 감정평가 결과

	감정평가금액(원)				
감정평가법인	평가액(원)	산술평균액(원)①	수수료(원) ②	매각가격(원) (①+②)	
메이트플러스	9,653,535,600	0.694.032.900	16 957 500	0.700.000.200	
씨비알이 현	9,714,510,000	9,684,022,800	16,857,500	9,700,880,300	

※ 매각가격 산출: 감정평가 산술평균액(9,684,022,800원) + 감정평가 수수료(16,857.500원)

※ 감정평가 기간: 2020. 6. 19. ~ 6. 30.

□ 추진경과

○ 2014. 12.: 공유재산 관리계획(강서문화센터 매각) 의회 승인

○ 2016. 2.: 강서문화센터 용도폐지 계획 기본방침 수립

○ 2016. 4.: 강서문화센터 용도폐지(행정재산 → 일반재산)

○ 2016. 5. ~ 6.: 강서문화센터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공고/재공고 ※공고결과: 유찰 및 공고 취소(강서문화센터 매각 후 임시운영공간 임차료 미확보)

○ 2020. 7. ~ 8.: 강서문화센터 매각 입찰공고(공고 결과: 유찰)

○ 2020. 8. ~ 2021. 1.: 화곡119안전센터 매각 협의 → 결렬(市 매압예산 미편성)

- 2022. 1.: 강서문화센터 사용부서 수요 조사 ※복지정책과 등 사용수요 제출
- 2023. 3.: 강서문화센터 용도변경(일반재산 → 행정재산)
- 2023. 4.: 시설이전(강서문화센터 → 강서아트리움)
- 2024. 2.: 강서문화센터 용도폐지(행정재산 → 일반재산)

□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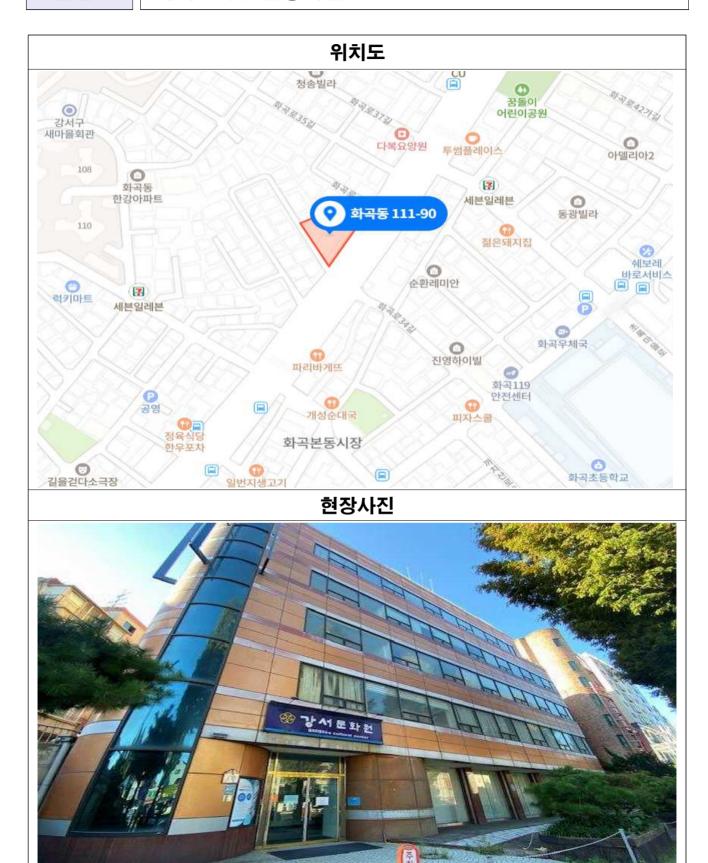
- 2024. 5.: 매각 계획 수립 및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
- 2024. 6.: 일반입찰 실시

□ 기대효과

○ 구 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- 붙임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 - 2. 토지이용계획서 1부.
 - 3. 관련법령 1부.
 - 4. 탁상감정결과 1부.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토지이용계획서

	IXI		서움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일	반 111 - 90	
	토지소지	IT.	지번	及風	면적(㎡)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봉			111 - 90	Oi	972
지역·지구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	도시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중요시설물보호지구(공항), 도로(접합)			
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	제한지역(2022-06-09)<건축합 건축과 문의)<건축법>, 수명	과 확인 요망)<가축분뇨의 건 참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이 표면구역(수평표면)<공항시: :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	분류(가로구역별 건축 설법>, 상대보호구역(2	물 최고높이:자세한 사항 1015-03-24(-교육환경 보
시행령」	공규제 기본법 레9조제4항 각 당되는 사항	건축선(2019-04-03)			
		도면			62
lin ma	111-278 111-208	111-870 111-870 111-870 1111-870 1111-	111-84G	orna)	□가로구역별 최고높이 한지역 □한보전산지 □도시지역 ■제2종일반주거지역 ■제3종일반주거지역 □도시기타용도지역지- 미분류

관련법령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

-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를 말한다)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**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**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른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10조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
탁상감정평가 결과

○ 의뢰인: 서울시 강서구청 재무과

○ 의뢰연월: 2023. 12.

○ 탁상감정 내역

감정평가법인	구분	평가액(원)	평가액(원)	산술평균 합계(원)	
㈜정일감정평가업인	토지	16,038,000,000	17,189,960,400		
	건물	1,151,960,400	17,109,900,400	16,570,540,750	
㈜경무감정평가법인	토지	14,580,000,000	15 051 121 500		
	건물	1,371,121,500	15,951,121,500		